

<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 및 환자본인부담금 >

(치과의원 기준)

구분	광중합형 복합레진 비용	치료비용 총액*	환자 본인부담금**
1면	5만3580원	8만1267원	2만4300원
2면	5만8020원	8만6373원	2만5900원
3면 이상	6만2450원	9만1468원	2만7400원

* 초진진찰료, 치근단촬영, 침윤마취, 중별 가산 적용 금액

** 치과의원 외래진료 기준 본인부담률 30% 적용 시

□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“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적용으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, 차후 발치·보철 등 고액 치료비 유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○ 또한, “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다”고 하였다.

○ 아울러, 보건복지부는 시행 6개월 이후에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모니터링(지속 관찰·검토)하여 필요 시 수가 조정 및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.

참고

관련 고시 개정 내용 및 질의·응답

-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65호, 2018.12.13.]

분류번호	코드	분 류	점수
		다.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Light Curing Composite Resin Restoration 주 : 접착전처리 및 약제, 재료비용과 러버댐장착, 즉 일충전처리, 충전물연마, 충전재료 비용은 소정점 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.	
	U0239	(1) 1면	631.85
	U0240	(2) 2면	684.15
	U0241	(3) 3면 이상	736.45

※ (참고) 19년도 치과의원의 점수당 단가는 84.8원

-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96호, 2018.12.28.]

항 목	제 목	세부인정사항
차13 충전	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	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- 다 음 - 가. 급여대상: 12세 이하 아동 나. 급여범위: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

3.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관련 질의·응답

연번	질 의	응 답
1	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 입니까?	2019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.
2	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	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진료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서 치아우식증(충치)*이 있는 영구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 예시) - 2019.1.1.에는 2006.1.2. 이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 급여가 적용됨 (출생일이 2006.1.1.이거나 그 이전인 경우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음) - 2019.12.31.에는 2007.1.1. 이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 급여가 적용됨 (출생일이 2006.12.31.이거나 그 이전인 경우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음) * 치아우식 상병(K020~K029)
3	치아우식증이 아닌 치아의 마모, 침식, 파절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?	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치아우식증 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
4	유치의 치아우식증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?	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영구치의 치아우식증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유치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5	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?	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[별표2]에 따른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. (치과의원 외래기준 30%)